

서 면 질 문

양재오의원

- 질 문 : 국유지 대부자 중 관내거주자 이외의 타지역인에게 대부하여 준 이유
- 답 변 : •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3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며,
- 잡종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제출, 동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시장과의 대부계약을 해야하며
 -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70%가 국가수입 30%가 시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 수익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을뿐, 대부 대상자의 요건을 규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외자라 하여 대부를 제한할 수 없음.

중동 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 경계조정 계획(안)

의안
번호

117

- 배 경
- 수도권 정비 계획 및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17만을 상회하는 중동 신도시 건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 신도시 지역 주민 입주 that 금년 12월부터 시작되므로 주민등록 전입등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비하여 법정동 경계 조정이 불가피함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법정동 경계 조정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로 내부위임)
- 경계 획정 수단
- 계획중인 행정동 경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되는 도로와 택지 브락을 경계로 획정 하였음.
- 주요 경계 획정 내용
- 삼정동 : 열병합 발전소 부지로 그대로 존치
 - 약대동 : 운동 시설 지구로 주민 입주 계획이 없어 중동에 일부 편입하고 그대로 존치

- 중 동 : 약대, 심곡동 일부를 편입하여 계획중인 행정동 경계 최대 활용 확정
- 심곡동 : 중동, 춘의동 일부를 편입하여 계획중인 행정동 경계 최대 활용 확정
- 춘의동 : 소규모 면적이 지구내에 있으므로, 심곡동에 편입 시켰음.

※ 지구내 송내동 일부 지역이 있으나 분구 계획에 상동으로 편입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므로 제외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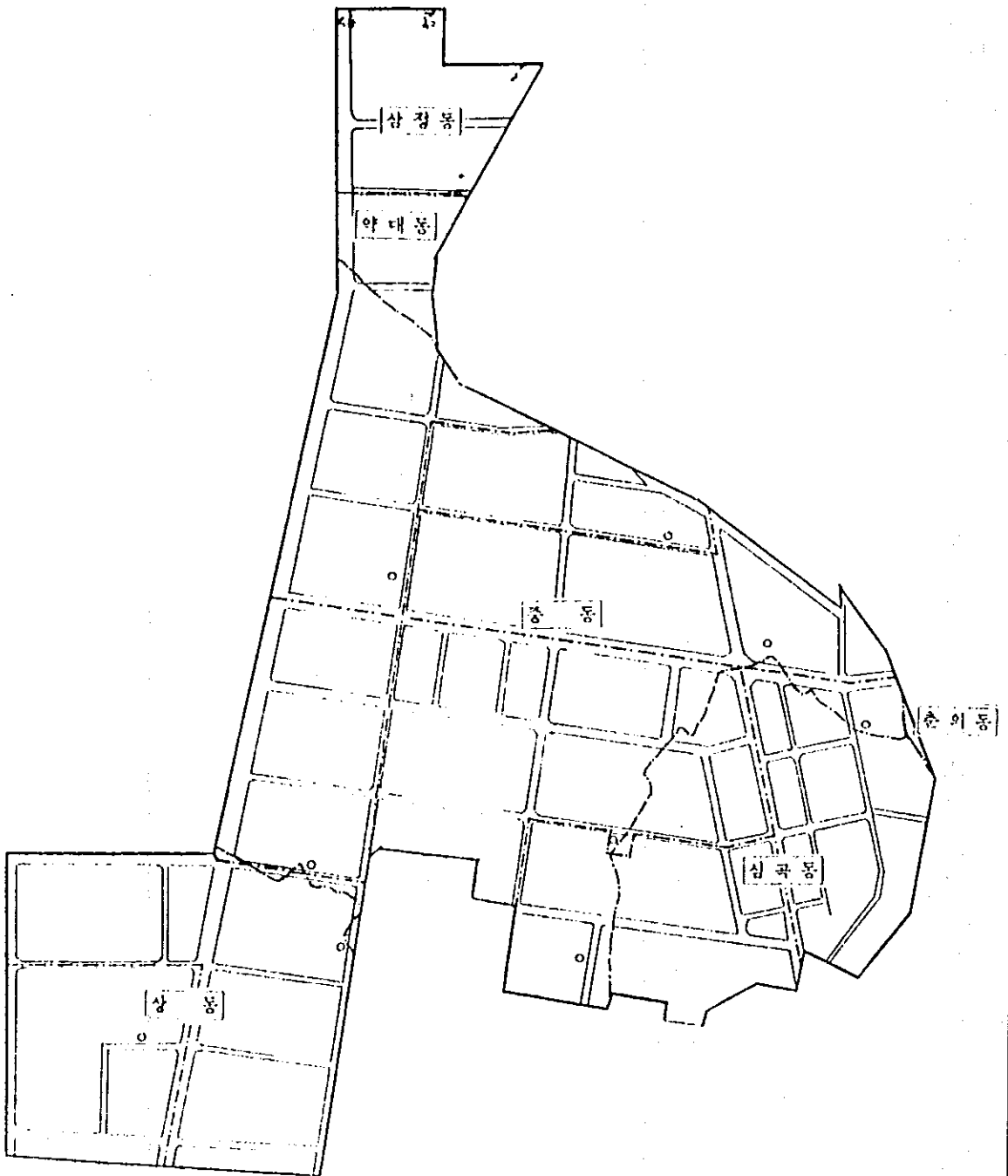
□ 시 의 견

- 중동 신도시는 전면 신규 택지개발 지구로 주민이 주거하지 않으며, 현재 법정동 경계가 없어 브릭별 신변지가 부여될 예정으로 확정 측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 중동 신도시 지구에 금년 12월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되므로 주민등록 전입등 제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 경계 조정이 시급함.
- 따라서 법정동 경계는 계획중인 행정동 경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되는 도로 및 브릭을 경계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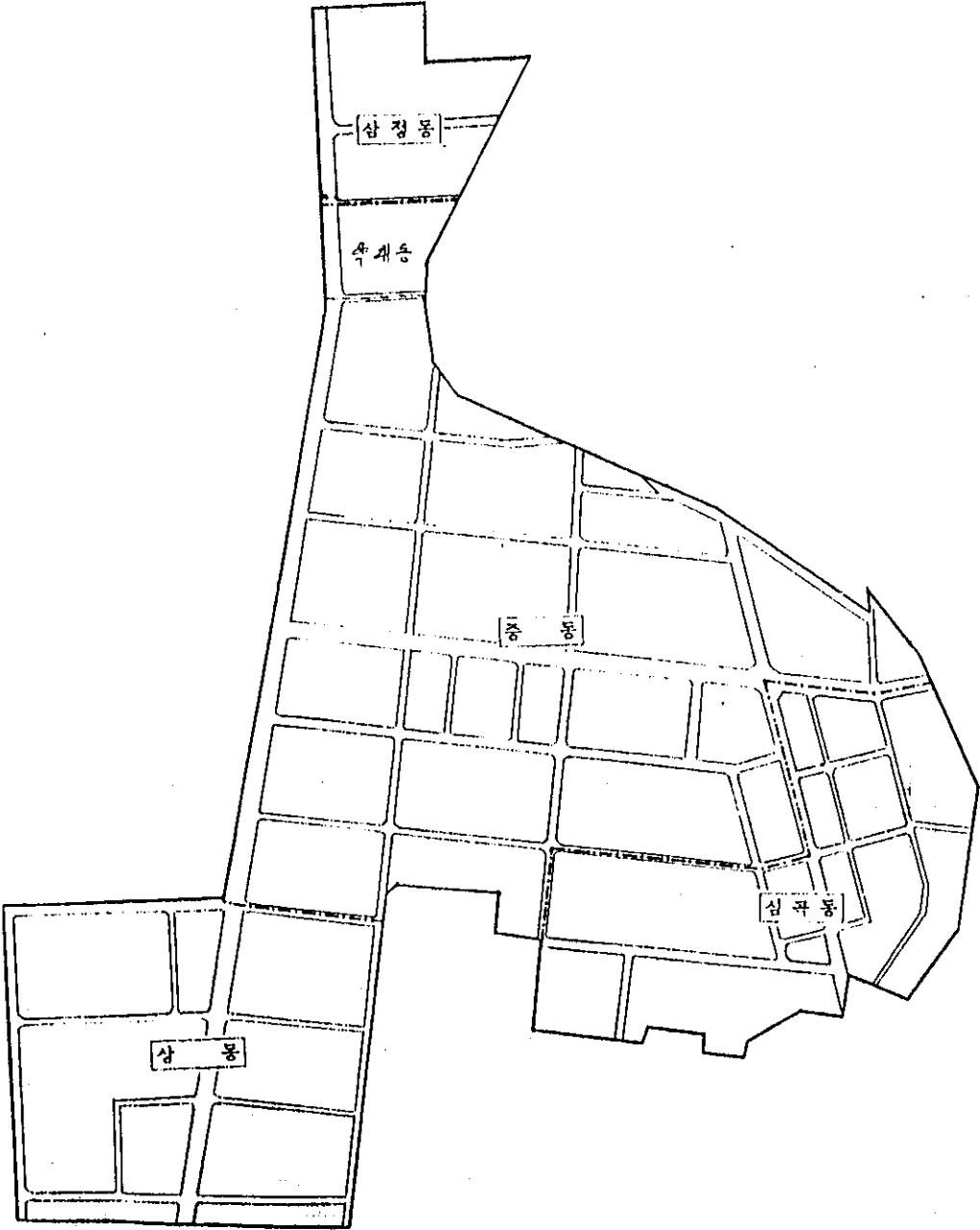
※ 별첨 도면 참조

□ 시의회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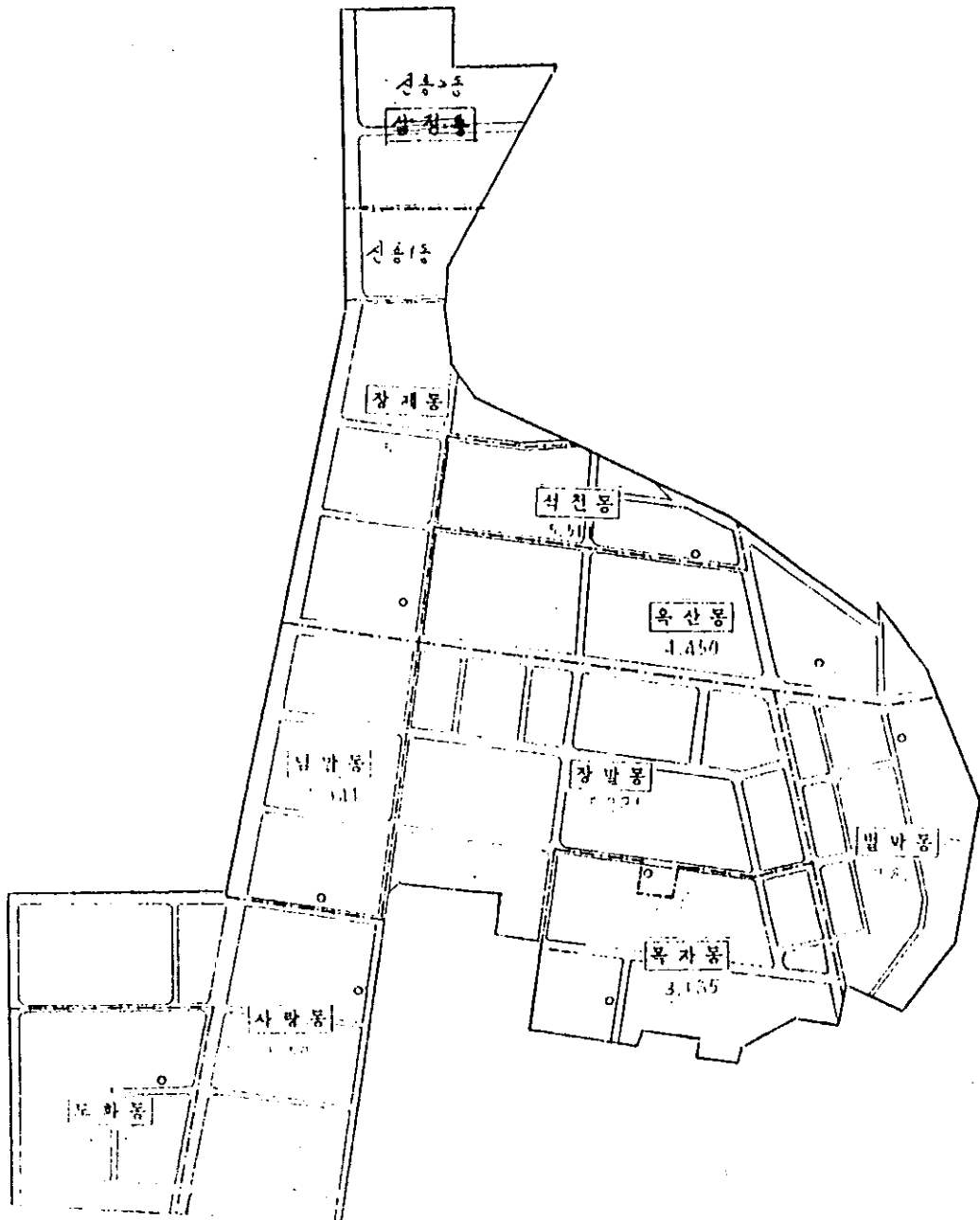
법정동 경계도 (변경전)



법정동 경계도 (변경후)



행정동 경계도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2년 9월 29일
- 나. 제안자 : 부 천 시 장
- 다. 회부일자 : 92년 10월 1일
- 라. 상정일자 : 92년 10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김 충 신)

가. 제안이유

- 수도권 정비 계획 및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17만을 상회하는 중 동 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 신도시 지역 주민 입주가 금년 12월부터 시작되므로 주민등록 전입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비하여 법정동 경계 조정이 불가피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위원만장일치)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심사의견

중동 신도시는 전면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며, 현재 법정동 경계가 없어 별 력별 신변지가 부여될 예정으로 확정측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동신도시지구내 금년 12월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주민등록전입 등 제반행정 서 비스 제공 및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 경계 조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법정동 경계는 계획중인 행정동 경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되는 도로 및 택지블럭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함.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기간 연장계획(안)

의안 번호	118
----------	-----

1. 설치배경

-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 사업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 계획적 신시가지 구성에 의한 교통·교육·문화 등 전반적인 도시수준 향상
- 기존도시와의 조화있는 개발로 부천시의 도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음.

2. 추진배경

- 89. 4. 29 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
- 89. 7. 18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 89. 11. 12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 89. 11. 13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 규칙 제정
- 90. 7. 21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 업무 규정 제정
- 91. 12. 31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사업소 설치조례 직제 규칙 개정

(1년 연장)

※ 당초 1991. 12. 31 에서 1992. 12. 31로 1년 연장

3.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부천시 남구 중동 일원
- 면 적 : 5,448천㎡ (1,648천평)
- ※ 부천시(55만평), 주공(73만평), 토개공(37만평)

- 사업비 : 12,000억원

• 부천시 사업비 : 5,500억원

• 보 상 비 : 2,996 "

• 공 사 비 : 2,013 "

• 업무관리비등 : 491 "

- 수용인구, 주택 : 170,000명, 42,500가구

○ 사업 추진 배경

-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부천중동 신도시건설 사업은 165만평의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부천시 주택난의 일부완화 및 교육,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높임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건설